

입법예고 제출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1. 5

중 소 벤 처 기 업 부

1. 제안이유

실증사업을 완료한 사업자에게 규제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(법률 제18102호, 2021.4.20 공포, 2021.7.21 시행)됨에 따라, 법령정비 요청서·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 등의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,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서식 상의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정비 요청서와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시행규칙 상에 명문화하고, 별지 서식에 규정(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서식 제8·9호)
- 나. 시행규칙 제11조의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및 그 외 별지 서식 상의 문구가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수정(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, 별지서식 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, 제10호, 제12호 및 제13호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 (2021.4.29. ~ 2021.5.10.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30. ~ 6. 9.) 중, 특기할 사항 없음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법령정비 검토결과서 등) ①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결과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59조제9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제1항 중 “별지 제8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0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9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1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제10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2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3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책임보험의 보험기간”을 “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3호 중 “1부”를 “1부(다만,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경우에는 그 결과)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」 제86조제4항·제6항”을 “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제4항·제6항, 제87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제3호 중 “책임보험의 보험기간”을 “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의 유효기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, 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(중전의 별지 제8호서식) 및 별지 제12호서식(중전의 별지 제10호서식)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(중전의 별지 제11호서식) 제3호 중 “책임보험의 보험기간”을 “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의 유효기간”으로 한다.

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	명칭		
	유형	[] 서비스 [] 제품 [] 서비스와 제품 융합 [] 기타	
	주요 내용		
기존 실증특례 확인 내용	확인번호		유효기간
	실증특례 대상 법령		
	지역		
	기간		
	규모		
	조건 ※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		
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	신청 사유	[] 유효기간의 만료 전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[]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 [] 기타 (직접 작성) :	
	기간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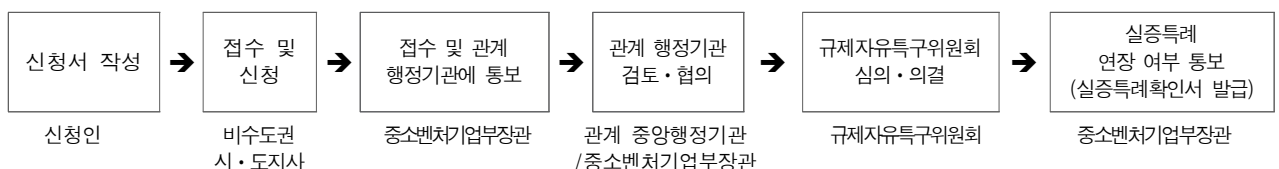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성명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실증특례 연장계획서 2.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3.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4.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1부 5.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1부 6.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1부
-------------	--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

제 호			통보 연월일	
법령정비 요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	
	주소	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	
규제 소관부처 검토내용	규제 법령			
	법령정비 필요 여부	필요함 [] 필요하지 아니함 []		
	주요 내용 (법령 정비 필요여부 등 검토 결과,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한 소관부처 처리 결과 등)			
그 밖의 안내 사항	※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가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(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)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87조제6항·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

법령 정비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실증특례 유효기간 계속연장 희망여부	희망함 [] 희망하지 않음 [] ※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87조제10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시 실증특례가 종료됩니다.		
규제의 내용·문제점			
법령 정비 방안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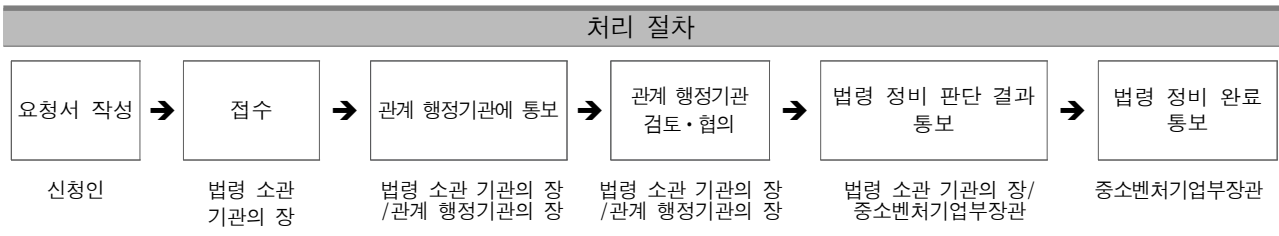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정비 대상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1부 2. 실증 결과보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.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(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한한다) 4. 그 밖에 법령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
-------------	---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임시허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
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	명칭		
	유형	[] 서비스 [] 제품 [] 서비스와 제품 융합 [] 기타	
	주요 내용		

신청 사유	[]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
	[]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
	[]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
	[]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제7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제8항,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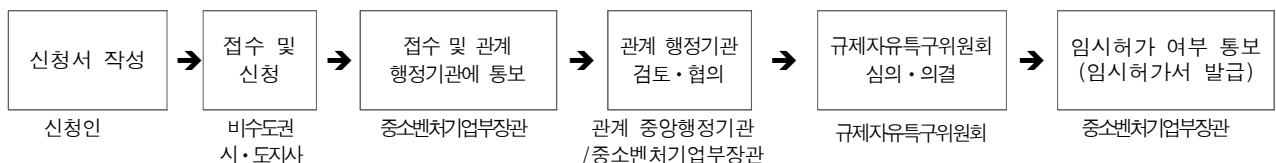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.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함)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(법 제87조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 3.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1부(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4.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·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.
-------------	---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소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	명칭		
	유형	[] 서비스 [] 제품 [] 서비스와 제품 융합 [] 기타	
	주요 내용		
기존 임시허가 내용	임시허가 번호		유효기간
	허가조건 ※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90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		
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	신청 사유		
	기간		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90조제8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<u>임시허가 연장계획서</u>									
	2.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									
	3.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									
	4. <u>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의 유효기간</u>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1부									
	5. 임시허가서 사본 1부									
	6.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1부									
처리 절차		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및 신청 비수도권 시·도지사	→	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	→	관계 행정기관 검토·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/중소벤처기업부장관	→	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 규제자유특구위원회	→	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여부 통보 (임시허가서 발급)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<u>제11조(임시허가 신청서 등)</u>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<u>별지 제8호서식</u>에 따른다. 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<u>별지 제9호서식</u>에 따른다. 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<u>별지 제10호서식</u>에 따른다. <u>제12조(임시허가 변경 신청서)</u>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<u>별지 제11호서식</u>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<u>책임보험의 보험기간</u>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(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4. 5. (생략)	<u>제11조(법령정비 검토결과서 등)</u> ①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결과서는 <u>별지 제8호서식</u>에 따른다. ② 영 제59조제9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<u>별지 제9호서식</u>을 따른다. <u>제12조(임시허가 신청서 등)</u> ① ----- ----- <u>별지 제10호서식</u>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별지 제11호서식</u>-----. ③ ----- ----- <u>별지 제12호서식</u>-----. <u>제13조(임시허가 변경 신청서)</u>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13호서식</u>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</u> ----- ----- ----- 4. 5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	
연 락 처	(044) 865 - 9655